[종합시험]

현재 종합 시험 규정

5. 종합시험

(1) 종합시험 주관 및 응시

1. 석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예비심사 이전에 학과에서 주관하는 종합시험을 합격해야 한다. 석 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종합시험을 거치지 않고 박사과정의 규정을 따른다.
2. 석사과정의 경우 2학기 종료시점 이내에 첫 종합시험을 응시해야한다. 종합시험의 구성 및 채점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3.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학위가 있는 박사과정 학생은 3학기 종료시점에,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5학기 종료시점 이내에 첫 종 종합시험을 응시해야한다. 종합시험의 구성 및 채점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4. 종합시험은 학과에서 주관하며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한 학기에 1회 개최한다.

변경사항

3.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학위가 있는 박사과정 학생은 3학기 종료시점에,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5학기 종료시점에 첫 종합시험을 응시할 것을 권장한다. 종합시험의 구성 및 채점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(2023학년도 1학기 응시 학생부터 적용)

[학위논문 예비심사]

현재 심사 규정

1. 학위논문 예비심사

가. 종합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학생은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.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논문 예비심사는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학기에 받을 수 있다.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논문 예비심사는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학기로부터 최소한 한 학기 후에 받을 수 있다

나. 예비심사는 학생의 학위논문에 대한 구두발표로 이루어지며 예비심사 위원회가 합격여부를 결정한다.

다. 예비심사 위원회는 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,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.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,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.

라. 예비심사 구두발표는 공개적으로 실시되며 발표심사 일정에 대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
라. 예비심사는 학생이 졸업을 목표로 하는 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에 실시할 수 있다.

변경사항

마.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졸업을 목표로 하는 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에 실시할 수 있다.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동일한 학기에 실시할 수 없으며, 졸업을 목표로 하는 학기 최소 한 학기 이전에 예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. (2023학년도 2 학기 심사 대상 학생부터 적용. 단, 2023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소명서를 제출하고 소명의 내용이 승인된 경우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동일학기에 실시할 수 있음.)